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완료시기 규정〉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08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08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광역교통개선대책 완료시기 규정	2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08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5.
3. 회 부 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도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선교통·후개발 추진이라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함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완료 이후까지 관련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4항)

Ⅲ. 검토의견

1. 광역교통개선대책 완료시기 규정(안 제7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 ③ (생략)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 -----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7조의2¹⁾에 따라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가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거나 직접 수립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2023년말 기준,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대규모개발사업 130개 지구에서 1,353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41개 지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완료하였는바,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1,353개 세부사업 중 833개 세부사업을 완료(이행률 61.6%)하고 520개(공사중 139, 미착공 381) 세부사업을 이행 중에 있으며,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철도의 경우 총 49개 사업 중 12개 사업만이 이행완료되어 24.5%의 저조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음.

< 광역교통 개선대책 세부사업 추진현황 (‘23. 12, 기준) >

구 분		계	도로	철도	BRT	접수시설	환승시설	대중교통*	기타**
이행 현황	사업수(개)	1,353	684	49	26	268	70	229	27
	완료	833	420	12	14	173	36	169	9
	이행률(%)	61.6	61.4	24.5	58.3	64.6	51.4	73.8	33.3
(사업수)	공사중	139	81	17	4	26	3	5	3
	미착공	381	183	20	8	69	31	55	15
집행 현황	대책비(천억)	1,020.1	631.3	314.4	11.7	40.6	13.9	3.8	4.4
	집행액	601	447.1	116.2	2.7	28.1	3.7	1.9	1.3
	집행률(%)	58.9	70.8	36.9	23.1	69.3	26.5	49.9	30.4
(사업비)	미집행액	419.1	184.2	198.2	9	12.5	10.2	1.9	3.1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런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추진이 지연되어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개선대책이 완료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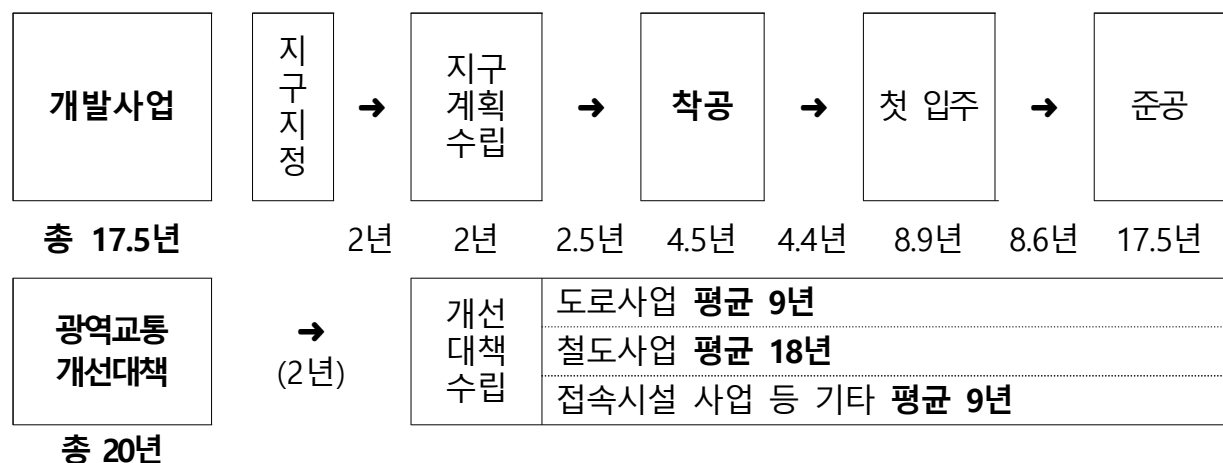
예를 들어 시흥 목감지구의 경우 2016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으나 목감-수암간 도로확장 사업은 공사중이며, 수원 호매실 지구의 경우에도 2019년에 준공을 마쳤으나 신분당선 연장선 및 연계 환승센터 등이 착공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개발사업 완료 전에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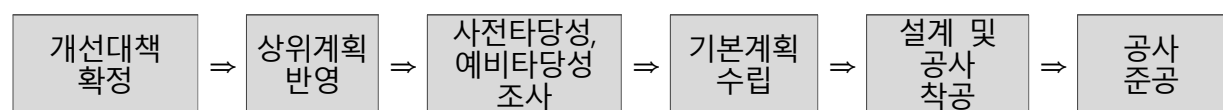
실제 2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일정 대비 교통개선대책 사업기간을 비교해보면, 도로사업 및 기타 접속시설 사업 등의 사업기간은 평균 9년으로 개발사업 소요기간보다 적게 소요되었으나, 철도사업의 경우 평균 18년이 소요되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았음.

< 2기 신도시 개발사업 일정 대비 교통대책 사업기간 비교 >



이는 철도사업의 경우 개선대책 확정 이후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에 기간이 오래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공사 규모가 크고 공사 기간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 개선대책 상 철도사업 추진체계 >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개정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모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이전에 이행하도록 규정할 경우 수립권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및 불법양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되,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철도 등 일부 장기간이 필요한 사업은 개발사업 완료 전 이행하는 것이 어려우며, 수립권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및 불법양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따라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이 개발사업 시행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사업 등 개별사업의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에 개선대책의 시행시기를 준수하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 있음.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 1

광역교통 개선대책 개요

□ 추진배경

-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의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교통 수요 지속 증가 및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심화
-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와 선교통-후개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도입('97.4)

* (법적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시행령 제9조

□ 세부내용

- (대상) 면적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 택지개발, 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역개발, 온천·관광지·유원지·공원개발 사업 등

- (수립시기)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 개발사업 유형마다 상이

- (수립권자)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주요 사업)

- (심의·확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수립현황) '23년 기준, 130개 지구(1,353개 사업) 수립·확정

- (재원부담) 개발사업시행자(LH 등) 등 교통수요 유발자 부담 원칙*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지침」 제19조

- (추진절차)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제출(수립권자 → 대광위) → KOTI 평가센터 검토 → 대도시권광역위원회(실무위·권역위) 심의·확정

참고 2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현황

□ (수립 현황)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수립 대상이며, 택지·공공주택·도시개발사업(94개, 72.3%)이 대다수

* 개발 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등이 1만명 이상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현황 (23.12, 기준) 】

구분	합계	택지개발	공공주택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기타
지구수	130*	38	32	24	21	6	9
수도권	87	31	28	16	8	3	1

□ (이행 현황) 총 1,353개 세부 사업 중 833개가 완료(이행률 61.6%)되었으나, 사업비는 총 102조원 중 60.1조원 집행(집행률 58.9%)

○ (미완료 사업) 도로가 217로 가장 다수이나, 이행률 면에서는 철도가 가장 저조(49개 중 37개 완미료, 미이행률 75.5%)

○ (미집행 사업비) 전체 41.9조원이 미집행 중이며, 도로(18.4조원), 철도(19.8조원)가 미집행 사업비의 91.1%를 차지

【 광역교통 개선대책 세부사업 추진현황 (23.12, 기준) 】

구 분		계	도로	철도	BRT	접수시설	환승시설	대중교통*	기타**
이행 현황 (사업수)	사업수(개)	1,353	684	49	26	268	70	229	27
	완료	833	420	12	14	173	36	169	9
	이행률(%)	61.6	61.4	24.5	58.3	64.6	51.4	73.8	33.3
	공사중	139	81	17	4	26	3	5	3
	미착공	381	183	20	8	69	31	55	15
집행 현황 (사업비)	대책비(천억)	1,020.1	631.3	314.4	11.7	40.6	13.9	3.8	4.4
	집행액	601	447.1	116.2	2.7	28.1	3.7	1.9	1.3
	집행률(%)	58.9	70.8	36.9	23.1	69.3	26.5	49.9	30.4
	미집행액	419.1	184.2	198.2	9	12.5	10.2	1.9	3.1

참고 3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절차도

